

동 자료는 2023년 12월 27일(수) 당정협의회 종료시점(10:00, 잠정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자료 내용은 당정협의회 종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(案)

-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-

2023. 12. 27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(요약)

## I 추진배경

- **[경과]** '22.1월 중대재해처벌법\*('중대법') 시행되었으나,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('24.1.27 시행)
  - \* 사업주·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
- '22.11월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\* 확립, 중소기업 지원강화,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
  - \*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, 수사감독 개편, 안전보건규칙 현실화 등
- **[50인 미만 사업장 적용]** 중대법이 5~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(약 +83.7만개)
  -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·예산 여건 등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담보 곤란 → 경제단체·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

## II 추진방안 주요내용

### 1.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- **[추진단 구성·운영]** 관계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및 협·단체 등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·운영하여 대책의 총괄·조정 기능 수행
- **[산업안전 대진단]** 50인 미만 사업장(83.7만개)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→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·일반사업장 선정(~24.2월)
  - \* (중점관리) 중대재해를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+ 지원신청 기업 등(+α) 선정 (일반)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
- **[맞춤형 지원 연계]**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(컨설팅·인력 등)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('24.3월~'26.1월)
  - \* (중점관리)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→ 시설개선 → 전문인력 배치 등 패키지 지원 (일반) 교육·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지속 확대, 협·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

## 2.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- **[컨설팅]** 위험성평가 지원 등 위한 컨설팅\* 확대('24년, 2.7만개),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('24년, 1,200개) 등 '24년 2.8만개 지원
  - \*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
- **[인력양성]** 교육·인건비 지원확대 등 통해 '26년까지 2만명\* 양성
  - \* ('24) 4천명 → ('25) 8천명 → ('26) 8천명
  -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,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 추진
  - 지역·업종별 협·단체 등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('24년 600명)
- **[교육·문화]** 소규모 사업장·지역산단·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,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\* 개발·보급
  - \* 모바일 시스템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위험요인, 교육자료, 자율점검표, 사고속보 등 제공
  - 자체 안전문화 진단·개선 위한 안전문화 평가지표(KSCI) 개발·보급

※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등 '24년중 약 31.6만개, 1,200억원 재정 투입

## 3.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

- **[설비·장비]** 안전투자 장기저리 용자를 확대('24년, 2,600개)하고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확대('24년, 1.7만개)
  -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·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 확대('24년, 4천개)
  - “스마트공장 + 스마트안전” 구축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\* 확대, 고위험 산단 대상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 확대
    - \* (중기부)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, (고용부)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
- **[R&D]**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('24년, 48개 과제)하고, 제조업·건설업 안전 R&D 추진 검토

※ 안전장비·설비 등 확충을 위해 '24년중 약 2.4만개, 9,300억원 재정 투입

## 4.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- **[협·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]**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·협회,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
    -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공동컨설팅·안전매뉴얼 보급 등 확대,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 패키지 지원
    - 산업단지공단 중심 「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」 기능\* 확충,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산단 안전주치의로 배정·지원 추진

\* 안전관련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안내, 지도·점검 합동실시, 패키지 지원 등
  - **[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]**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\* 확대,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
    - \*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 일부(50%)를 정부가 부담
    - 대기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\* 부여, 원·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('24.上)

\*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, 산업안전 ESG 우수기업 지원강화, 재정지원 우선 선정 등
- ※ **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·추진('24.上)**
-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상향·한도확대\*,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(경영평가 등)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
- \* 現 효율의 15~20% 상향 검토,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·폐지 등
- **[안전보건산업 육성]**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·장비·R&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('24년)
  - 민간 재해예방기관·안전교육기관을 활성화하고,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통해 안전보건시장 확대,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

◇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,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「'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」 추가 마련('24.下)

※ '24년중 1.2조원 예산투입 + 간접 투입효과 → 총 1.5조원 규모 지원

# 순 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.....	6
III. 세부 추진방안 .....	7
1.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.....	7
2.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.....	10
3.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.....	14
4.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.....	16
IV. 향후 추진계획 .....	21
[별첨]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.....	22

# I. 추진배경

## 1 그간의 추진경과

- **[중대재해처벌법 시행]** '22.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·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('중대법') 시행·적용중
  - 이에 따라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\*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\*\* 구축·이행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여
    - \*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
    - \*\*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·인력·예산 확보,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(위험성평가) 등
  - 同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강화(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
  - 법 제정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('24.1.27 시행)
- **[정부 정책·노력]** 기업들이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 추진
  - '22.11월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\*」을 마련·발표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새로운 산업안전 패러다임으로 제시
    - \* 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, ②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·관리,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, ④산업안전 거버넌스 정비
  - 同 로드맵을 기반으로 건설·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·컨설팅·장비 등 지원중

## < 그간의 추진실적 및 한계 >

◇ 그간 정부는 **중대재해 감축**을 위해 「**중대재해 감축 로드맵**」(22.11.30) 마련 + **컨설팅·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책적 노력 추진**

1] [**중대재해 감축 로드맵**] ①**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**, ②**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·관리**, ③**안전의식·문화 확산 등 추진**

- ▶ (**위험성평가 확산·안착**)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결과공유 방안 마련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 완료('23.5월)
- ▶ (**예방점검 확대**) 노·사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·개선토록 지원하는 '**위험성평가 특화점검**' 중심으로 감독체계 혁신(2만개소 점검 완료, '23.10월말)
- ▶ (**재해다발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**)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(25% 내외)도 **감독 실시 + 현장점검의 날**(매월 2회) 운영
- ▶ (**안전교육 강화**)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**안전교육 제도개선 방안**('23~) 마련, **외국인 근로자** 송출국(16개국) 언어로 안전보건교육 **교재 개발·보급** 지속
- ▶ (**정보공개 확대**) '**중대재해 사이렌**(오픈채팅방)' 통해 사고현황·위험요인·안전수칙 등 정보공유(420건), 「**중대재해 사고백서**」 통해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 분석·제시
- ▶ (**안전문화 확산**) 지역별 '**안전문화 실천추진단**'('23~) 발족 및 **안전문화 확산**

2] [**중소기업 지원**]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에 대비, **컨설팅·교육 및 기술지도 등 집중 지원** → '22~'23년중 45만개소 旣지원

- ▶ (**컨설팅**) 고위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→ 약 **1.6만개소**
- ▶ (**교육**)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→ 약 **7.8만개소**
- ▶ (**기술지도**) 핵심안전수칙(보호구 착용, 안전점검 실시 등) 제공, 주요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·개선지원 → 약 **36만개소**

⇒ **중대재해 사망자수 감소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, 현장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, 지원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**

## 2 現 상황 진단

- **[중대재해 현황]** '22년 이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,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사고 집중
  - '22년의 경우 전년대비  $\Delta 5.7\%$  감소하였으며, '23.1~9월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 $\Delta 10\%$  감소

< 중대재해 사망자수 및 비중 (단위 : 명, %) >

구분	전체	50인 미만 (50억원 미만)		50인 이상 (50억원 이상)	
'21	683	435	(63.7)	248	(36.3)
'22	644	388	(60.2)	256	(39.8)
'22.1~9월	510	308	(60.4)	202	(39.6)
'23.1~9월	459	267	(58.2)	192	(41.8)

\* 출처 :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통계

\*\* 50억원 이상/미만은 건설업 기준

- **[규모별]**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60% 수준을 차지하여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가 요구
- **[업종별]**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중 건설·제조업 분야가 각각 53.6%, 25.8% 차지('23.9월말 기준)
- **[기업현장 상황]** 법 시행 초기단계로, 아직까지 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 및 안전의식·문화 확산 등 진전 미흡
  -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내실있는 이행에 부담·애로를 겪고 있고, 관계법령·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속 제기
  -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지원 확충 및 민간역량 활용 등을 요청



### 3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

- **[적용대상]** 중대범이 50인 미만(5~49인)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대폭 증가 → 약 83.7만개

< 규모별 사업장 현황 (23.6월말, 단위 : 천개소 ) >

구분	합계	5인 미만	5~50인 미만	50~300인 미만	300인 이상
전체	3,439	2,530	837	62	9
제조	374	244	118	10	1
건설	686	532	142	10	2
기타	2,379	1,754	577	42	6

\* 출처 : 고용노동부

- **[대응여건]** 법 적용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부여되나, 열악한 인력·예산 등 여건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 담보 곤란
  - 이에 따라 경제단체·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 및 유예기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 등을 요구하는 상황

#### < 안전보건확보 의무 >

##### 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조치(9개)

조치 사항	50인 이상	50인 미만
① 안전보건 목표·경영방침의 설정	○	○
② 안전보건 전담조직*의 설치 * 안전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,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(산안법§17~19, §22)	△	×
③ 유해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	○	○
④ 안전보건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·집행	○	○
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, 평가 및 관리 *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시 적용	○	△
⑥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*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, 20~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, 임업, 하수환경·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	○	△
⑦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	○	○
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마련, 조치여부 점검	○	○
⑨ 도급·용역·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	○	○

- 관계법령상 의무이행·관리(4개), 재발방지대책(1개) 및 시정개선(1개) 조치 등 부여

## < 中企·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>

조사기관 (조사기간 및 대상)	주요내용	건의사항
<b>중기중앙회</b> ① '23.8.23~25, 50인 미만 중소 기업 892개社 ② '23.10.16~18, 50인 미만 중소 기업 600개社	■ 중소기업의 <b>80.0%</b> 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* (미흡사유) ①전문인력 부족(38.2%), ②예산 부족(27.4%), ③의무이해 곤란 (22.8%) 등 응답	■ ①안전부문 재정·세제지원(45.0%), ②법 해설서 등 지침 제공(18.9%), ③컨설팅 확대(17.3%), ④전문 인력 채용·활용 지원(10.3%) 등을 정부에 요구
	■ 중소기업의 <b>83.7%</b> 가 법 적용에 우려* 표명 * ①대표이사 실행 가능성(34.6%), ②안전 비용 증가(24.1%), ③준비사항 불분명 (20.1%), ④수사기관 등 사법대응 부담(15.2%) 등 응답	■ 국회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통과 필요한 법안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 요구(47.0%)
<b>대한상의</b> ※ '23.10.11~27, 50인 미만 중소 기업 641개社	■ 중소기업의 <b>76.4%</b> 가 법 시행 대비에 미흡한 상황 → <b>89.9%</b> 가 적용유예 필요 응답 * (미흡사유) ①방대한 법 준수사항 (53.7%), ②안전인력 확보 애로(51.8%), ③과도한 비용 부담(42.4%) 등 응답	■ 업종별 ①매뉴얼 배포(59.0%), ②안전 인력·인건비 지원(49.8%), 안전투자 등 ③재정·세제지원 (47.6%) 등 요구
<b>건설협화건설연</b> ※ 전문건설사 781개社	■ 건설사 <b>96.8%</b> 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 → 법 적용 제외 또는 유예 필요	■ 중대재해 요건 완화(51.2%), 안전 보건의무 축소(34.4%) 등 법령 개정과 함께, 안전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요구
<b>경총</b> ※ '23.11.14~22, 50인 미만 기업 1,053개社	■ 응답기업의 <b>45%</b> 가 안전전문 인력이 없으며, <b>82%</b> 는 컨설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	■ ①매뉴얼 보급(33%), ②전문 인력 지원(32%), ③안전설비 비용 지원(17%), ④컨설팅 지원 (13%), ⑤교육 지원(5%) 등 요구

## II.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
### 추진 목표

◆ '24~'25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 →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\* 추진

\* [사고사망만인율] ('22년) 0.43‰ → ('26년) 0.29‰

### 기본 방향

◆ 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\* 추진

\* 컨설팅·기술지도, 인력교육, 장비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

◆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및 인프라 확충 병행

추진 분야	세부 과제
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	①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② 대진단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
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	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·기술지도 지원 ④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
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	⑥ 안전장비·설비 등 지원 확대 ⑦ R&D 지원 강화
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	⑧ 협·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⑨ 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⑩ 안전보건산업 육성

⇒ '24년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'10대 과제' 역점 추진,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'25년 시행계획 추가 마련

※ '24년중 1.2조원 예산투입 + 간접 투입효과 → 총 1.5조원 규모 지원

### Ⅲ. 세부 추진방안

####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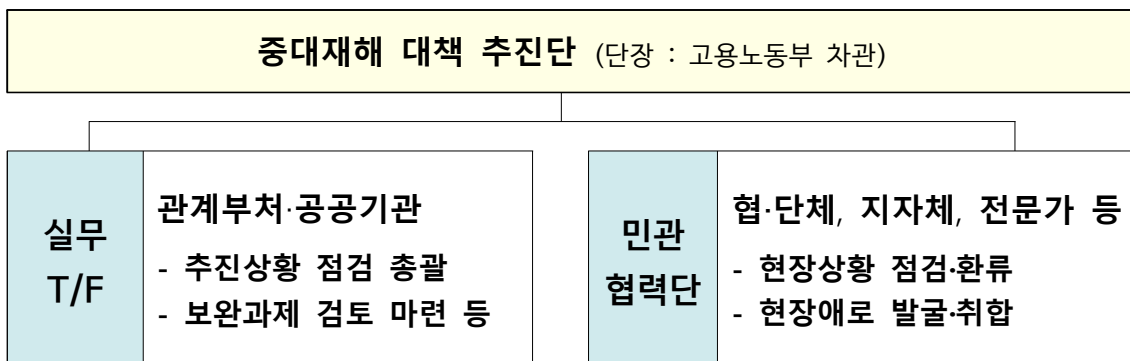
◇ **(현황)** 중대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별로 중대재해 취약성 및 대응여건 상이

⇒ **(대응방향)**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 선정,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

#### ①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·운영

- **(추진단 구성·운영)** 관계부처·공공기관·지자체 및 협·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「중대재해 대책 추진단」 구성(24.1월~)
  -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총괄·조정·구체화 기능 수행
  -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, 추진과제 실무협의·조정 등을 위해 실무 T/F 설치
  - 협·단체 협력하에 현장 전수점검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단 구성·운영

#### < 추진체계 >



## ②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및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연계

- **(산업안전 대진단)** 민관 협력단이 함께 5~50인 미만 사업장 83.7만개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→ 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(~24.2월)
  - 업종·재해현황·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 중대재해 대응역량 분석 등을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+ $\alpha$  선정
  - 중점관리 사업장 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

### <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기준(안) >

- ▶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시 업종별 특성 및 사업장 특성 등 고려
  - (업종별 특성) 사고사망자 비중, 사업체수, 업종 고유특성 등 반영
  - (사업장 특성) 산업재해 현황, 위험기계·기구 보유 현황, 작업환경, 화학물질·유해인자 취급 종류 등 반영

- **(맞춤형 지원 연계)**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(컨설팅·인력 등)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('24.3월~)
  - **(중점관리)** 8만개+ $\alpha$ 는 ①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→ ②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→ ③필요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패키지 지원
  - **(일반)** 교육·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,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협·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
- **(점검·피드백)** 민관 협력단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 해소
  -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·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 T/F 수시 가동

##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(안)

### 산업안전 대진단

-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진단 (83.7만개 전수)

-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
- 민관합동 진단 추진

### 사업장 분류

- (중점) 8만개 + α
- (일반) 중점관리 사업장 外

-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 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

### ❖ 맞춤형 지원 연계 : (중점) 단계적 패키지 지원 / (일반) 신속 개선유도

#### 중점관리 사업장 (8만개+α)

- 단계적 진단·구축 + 패키지 지원
-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**컨설팅** →
- ② **위험시설** 및 **공정** 등 개선지원 →
- ③ 공동안전관리자 등 **전문인력** 지원

- 중점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집중지원(우선 배정)

\* ('24년 지원물량) 컨설팅 2.8만개, 시설 개선 1.5만개, 공정개선 4천개 등

#### 일반 사업장 (중점관리 사업장 外)

- 자체적 **개선유도** 및 **교육·기술지도** 등 지원
- 현장여건에 따라 **시설·공정** 개선, **전문인력** 지원 등도 연계
- 필요시 **협·단체**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 추진

- 교육·기술지도 중심으로 개선 도모

- **협·단체**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자체 개선지원 보완

\* ('24년 지원물량) 교육 7.2만개, 기술지도 21.6만개 등

⇒ '24년중 지원 및 개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'25년 지원물량 **확충**

##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◇ **(현황)**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·예산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자체적인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갖추기 여의치 않은 상황

※ **【현장목소리】** “법 시행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였어야 했지만,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, 사람도 돈도 빠듯한 중소기업에 시간이 더 필요”

⇒ **(대응방향)**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·교육 확대,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부문 우선배치 추진

###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·기술지도 지원

○ **(중소기업 컨설팅 지원)** 중소규모 제조·건설업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대폭 확대('24년 2.7만개) <sup>고용부</sup>

\* **[지원대상]** (제조업) 300인 미만(50인 미만 중심), (건설업) 시공순위 200위 초과  
**[지원내용]**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 
**[지원기관]** 산업안전보건공단(‘안전보건공단’),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

▪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공 후 미흡한 부분 집중 지원,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으로 지원

▪ 산업재해 예방 종합포털\*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진단·인증 관련 사업 추천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활동 지원

\* 각종 산재예방 관련 민원신청, 법령, 사업소개, 사업장 위험도 예측 서비스 및 안전보건 자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

산업안전 컨설턴트 교육



산업안전 컨설팅 전후 개선사항

개선 전		개선 후	
유해 위험 요인	파이프 커팅 톨날에 배임사고 발생 가능 파이프 절단 시 비산되는 파면에 상해 발생 가능	위험성 감소대책	개선 후 위험성
예상 위험	현재 안전보건조치	현재 위험성 가능성 (빈도)    중대성 (강도)    위험성	1. 파이프 커팅기 전용 방호장치 장착 2. 파이프 커팅기 사용 시 보호장비 착용 교육 강화
배임/상해	방호장치 미흡	4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약간 높음(2)	
		매우낮음 (3)	

- **(건설현장 컨설팅 지원)**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 지원을 지속 확대 추진('24년 1,200개) <sup>국토부</sup>

\* **[지원내용]**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어 안전교육 실시, VR 체험교육, 지자체 협업 집합교육,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  
**[지원기관]** 국토안전관리원

- **(제조 소기업 컨설팅 지원)**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을 통해 제조 소기업의 안전장비 구비 등 패키지 지원('24년 100개) <sup>중기부</sup>

\* **[지원대상]** 주업종이 제조업 +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 
**[지원내용]** 중대재해예방 컨설팅(필수) → 기술지원, 마케팅(선택)  
**[지원기관]**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- **(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)** 사업주 경영관리자층 대상 토론형 교육, 외부전문가 멘토링 및 위험방지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검토 <sup>고용·중기부</sup>

\* **[지원대상]** 중소기업(50인 미만 기업 중심)  
**[지원내용]**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, 안전경영문화 확산, 중대재해 대응 시스템 (산업안전 AI 분석, 작업자 알람서비스 등) 구축, 안전 캠페인 등  
**[지원기관]** 대한상의

- **(기술지도 내실화)** 제조·건설, 서비스 등 업종별 특화된 유해·위험요인 발굴·개선 등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 <sup>고용부</sup>

## 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

- **(안전보건관리자 양성 확대)** '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\*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, 학과신설, 자격확대 등 추진 <sup>고용부</sup>

\* ('24) 4천명 → ('25) 8천명 → ('26) 8천명



-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\*을 통해 매년 4천명의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 양성('24~'25년)
  - \* (건설업) '22~'23년중 한시 운영중인 교육을 '25년까지 연장 → 매년 2천명 양성  
(비건설업) '24년부터 실무경력자 대상 양성교육 신설 → 매년 2천명 양성
-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신설, 대학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 등 확충
- 공학·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학점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점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(산안령 개정, '24.上)
- (안전관리전문가 지원)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·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<sup>고용부</sup>
  - 지역·업종별 협회·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토록 지원을 신설하고,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 수행('24년 600명)
    - \*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업종별 협·단체 주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하고, 안전보건공단이 수행·평가 및 인건비 등 지원
  -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을 안전관리자 구인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

---

### ③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

---

- (체계구축 교육 확대)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및 특화교육 실시('24년 7.2만명)<sup>고용부</sup>
- (소규모 사업장)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\*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특화교육 제공('24년 1.5만명)
  - \* 슷폼 동영상 형태의 사례중심 교육콘텐츠 제작, 체험형 VR 콘텐츠 개발, 소업종·직종별 세분화된 교재·교안 개발 등

- **(지역산단 안전교육)** 지역별 고위험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입주 기업 사업주·경영관리자층 대상의 교육\* 실시('24년 6천명)

\* 위험성평가 교육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등 운영

- **(외국인력 안전교육)**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패키지\* 지원('24년 5천명) 고용국토부

\* 다양한 외국어로 안전수칙 등을 슷츠·문자·애니메이션 등 통해 제공, 체험형 VR 교육, 사업주 대상의 위험성평가 교육 등

- **(안전관리 활동지원)** 중소 건설현장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손쉽게 확인·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(App) 개발(~'24년) 및 보급('25년~) 고용부

\* **[지원대상]**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

**[지원내용]**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공정별 핵심 위험요인, 재해예방 교육자료, 자율점검표, 사고사례, 사고속보 등 제공

**[지원기관]** 안전보건공단

- **(안전문화 확산)** 사업장내 안전문화 수준진단 및 개선요인 파악 등을 위해 K-안전문화 평가지표(KSCI) 개발·보급 확대('24년) 추진 고용부

- 안전보건공단-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·활동 전개

※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 
 ①컨설팅 및 ②교육·③기술지도 지원 등 “3층 체계” 강화

⇒ '24년중 약 31.6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지원 등을 위해 약 1,200억원 재정 투입

### 3 **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**

- ◇ **(현황)** 소규모 사업장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안전장비·설비 확충 및 R&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, 기업 자체적 추진여건 미비
  - ※ **【현장목소리】** “원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시 안전예방 인력·장비 등 지출 경비가 부담되어 정말 힘들어질 것”
  - ⇒ **(대응방향)** 정부 재정투입 보장 등을 통한 장비·설비·R&D 확충

#### 1 **안전장비·설비 등 지원 확대**

- **(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)** 사업장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 용자 확대(‘24년 2,600개) 고용부

\* **【지원대상】**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(※ '22년, 50인 미만 사업장에 98% 지원)  
**【지원내용】** 사업장당 10억원 한도(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  
**【지원기관】** 안전보건공단

- **(스마트 안전장비·시설)**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 지원 확대(‘24년 1.7만개) 고용·중기부

구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규모
▶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<small>고용부</small>	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	최대 3천만원	11,732개
▶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·확산 <small>고용부</small>	50인 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,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선정		2,544개
▶ 건강일터조성 <small>고용부</small>	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	최대 5천만원	373개
▶ 클린 제조회환경 조성 <small>중기부</small>	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	최대 420만원	2,000개

- 대기업이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협력사로 보급·확산하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(‘24년 동반위) 중기부

- **(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)**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·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 확대(‘24년 4천개) 고용부

\* **【지원대상】**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중 뿌리공정 등 제조업종 사업장, 원·하청 상생지원 참여 사외하청·중소기업  
**【지원내용】**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~50%(최대 1억원)  
**【지원기관】** 안전보건공단

- 공정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계·기구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추진(‘24년 9.1만건)

- **(안전 작업환경 조성)**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지원('24년 8.8만개) <sup>고용부</sup>

\* **[지원대상]** 유해인자(화학물질, 소음 등)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
**[지원내용]** (신규사업장) 측정비용 전액(100만원 한도), (기존사업장) 측정비용 80%(40만원 한도)  
**[지원기관]** 안전보건공단

- **(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)** 중소 제조기업에 “스마트공장 + 스마트 안전”을 도입하기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\*을 확대('24년 10개) <sup>중기부</sup>

\* (중기부) 첨단기술(IoT, AI 등) 통한 고도화 구축 지원, (고용부) 컨설팅·스마트 장비 지원

- **(스마트 안전산단 구축)** 고위험 산단 대상 스마트 안전솔루션·안전 감시설비 설치 지원('24년 6개 산단 시범사업 후 '25년부터 대상 확대) <sup>산업부</sup>

\* **[지원대상]** 시설 노후화, 위험물질 취급 등 산단내 고위험지역(6개 산단 시범사업중)  
**[지원내용]** 산단내 특별안전구역에 첨단 CCTV·감지센서 등 안전솔루션 및 안전감시장비 설치비용 지원  
**[지원기관]** 산업단지공단이 민간컨소시엄을 선정·추진

## 2 R&D 지원 강화

- **(안전보건연구)**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·작업환경 등 연구 추진('24년 48개 과제) <sup>고용부</sup>

- **(제조안전 R&D)** 50인 미만 제조기업의 재해예방·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검토('24년~) <sup>중기부</sup>

\* **[지원대상]** 공급기업과 도입기업(50인 미만 제조기업)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 
**[지원내용]** ①작업자 행동, ②위험기계 관리, ③화재·폭발·누출, ④안전점검 분야 등  
**[지원기관]**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- **(건설안전 기술개발)** 건설현장의 위험성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형 안전장구 개선 추진 등 검토 <sup>국토부</sup>

- 안전 관련 민간기술 활용 증대를 위해 최소안전기준 및 실증 여건 등 제공('24년) → 실효성 검토 후 소규모 현장지원 추진

※ '24년중 약 2.4만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·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약 9,300억원 재정 투입

##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◇ **(현황)** 기업별 다양한 상황·수요에 맞추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안전·중대재해 예방지원만으로는 한계

※ **【현장목소리】** “안전시설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을 정부의 몫으로 맡기기보다 민간 주도의 원·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생태계 조성이 바른 대안”

⇒ **(대응방향)** 협·단체 중심 지원, 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, 안전보건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추진

### 1 협·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

- **(협·단체 중심의 업종별 지원)**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·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국토·중기부
  - 공동컨설팅,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, 안전관리 사례 공유, 전국 순회 설명회 대폭 확대
  - 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별\* 안전매뉴얼을 제작·보급하고,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
    - \* ①금속제련, ②기계·금속·비금속, ③화학·고무, ④수제품·기타제조, ⑤섬유제조업 등
  - 협회·조합 등에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\* 기획·추진시,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
    - \* (조선업) 하청근로자 보호, (화학업) 화재·폭발 예방, (폐기물처리업) 끼임사고 예방
  - 법 전면적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·소송비용 보장 등을 위한 공제·보험제도 설계 및 상품 개발 추진(중기중앙회·건설공제조합 등)
- **(산단 통합안전관리)**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합동 안전관리·안전지원 추진 산업부

안전관리기관 협의체 구성



종합안전관리 추진방향

기존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개별관리)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·지도</li> <li>• (단순지원) 안전 홍보·교육 중심의 예방활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통합관리) 기관별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통합제공</li> <li>• (지원강화) 공동 안전관리 및 협업 과제·정책 추진</li> </ul>

-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안전관리기관\*이 참여하는 「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」 기능\*\* 확충(현재 13개)
  - \* 안전보건공단, 가스안전공사, 전기안전공사, 환경공단, 소방서 등
  - \*\*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 안내, 지도.점검 합동 실시, 지원사업 패키지화
- 주요 산단에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안전주치의로 배정하여 중소·영세기업의 안전관리활동 밀착 지원('24년~)

## 2 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

### 【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】

- (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) 중소기업(협력업체)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(원청)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산<sup>고용부</sup>

\* [지원대상] 100인 이상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 
 [지원내용]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소요비용을 정부(50%)와 모기업(50%)이 분담 지원  
 [지원기관] 안전보건공단

- 안전보건 분야의 원·하청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모델 발굴·홍보

#### < 원·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>

- ▶ (포스코) 자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전문가('22년 108개), 안전 교육비('22년 83개), 안전 관리비('22년 93개) 등 지원
- ▶ (현대중) 협력업체 대상(23년 78개) 안전교육(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) 및 근로자 안전물품(안전화, 도수 보안경 등) 구매비용('23년 41억원) 지원
- ▶ (현대차) ◦현대차그룹 6개사 출연으로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안전보건공단간 상생협력 MoU 체결('23.11월) → 중소·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교육, 매뉴얼 개발, 위험설비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 추진  
 ◦중소협력사('23년 175개) 대상 필수안전장치(지게차 안전장치) 구입 및 설비(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) 비용('23년 35억원) 지원

- **(대기업 인센티브 확대)** 대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상생협력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고용·중기·금융위
  - 대기업이 자사 외부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, 중대재해 예방 노하우 전수 및 기술지도시, 추진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확대 반영(‘24년 동반위) 중기부
  -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검토(‘24년) 금융위
  -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 지원시 고용부 추진중인 안전 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우선 선정(‘24년) 고용부
- **(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)**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·하청간 역할구분, 안전비용 등 도급계약시 반영사항 등 기준\* 제시(‘24.上) 고용부
  - \* 「가칭도급사업시 원·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」 마련·보급

**※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·추진(‘24.上)**

### **【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】**

- **(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)**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상향 및 사용한도 확대(고시 개정, ‘24년) 고용부

<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>

- ▶ **(개념)**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
- ▶ **(대상)**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
- ▶ **(계상)** 예정가격 작성시,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 (재료비+직접노무비)의 2~3% 내외로 계상
- ▶ **(사용)** 안전·보건관리자 임금, 스마트장비 등 안전시설비, 보호구, 안전보건 진단비, 안전보건 교육비, 위험성평가 이행비용 등

-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現 효율의 15~20% 상향\* 검토(고시 개정, ‘24년)
- \*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·용역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상폭 결정

-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·임대 확대를 위해 사용  
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·폐지\*(고시 개정, '24.上)
- \* ('22~) 구입임대비용의 20% → ('24) 40% → ('25) 60% → ('26) 80% → ('27) 폐지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\* 방안 검토
- \* 건설분야 협회·조합 등 관련기관 및 기업현장 의견(예 : 근로자 재해공제 보험료 등)  
지속 수렴
- (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)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 
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장\* 작성제도 개편(산안칙 개정, '24.1분기) 고용부
- \* (계획단계) 기본안전보건대장(발주자 작성, 설계자에게 전달)  
(설계단계) 설계안전보건대장(설계자 작성, 발주자의 작성 확인 및 시공사 전달)  
(시공단계) 공사안전보건대장(시공사 작성, 발주자의 작성 및 이행 확인)
- 작성기준 자료 및 제출시기 명확화, 작성항목 정비, 전문가  
확인시기 구체화, 개선조치 의무 명확화 등 추진
- (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지원)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 
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('24년~) 기재부
-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\* 심사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노력  
배점을 확대하고,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\*\*에 반영
- \*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·수준·성과를 종합심사 후  
기관별 등급(1~5등급) 결정
- \*\* '산업재해 예방노력·성과' 항목으로 경영평가 계량 0.5점 반영
- 추진단 중심으로 수급업체 지원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

< 대형 공공기관의 우수 지원사례 >

- ▶ (중부발전) ①2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절차 수립  
②1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시 외부전문가 기술지도를 받도록 제도 마련
- ▶ (LH) ①소규모 공사 수급인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대면교육 시행(326명 이수)  
②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중 고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강화
- ▶ (철도공단) ①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미대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방침 수립시행  
②안전관리자 배치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
- ▶ (농어촌공사) ①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수급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(총 80개 현장완료)  
②건설현장 관리표준 매뉴얼 신설·시행



### 3 안전보건산업 육성

- **(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)** 건설탕·교육·기술지도, 장비·R&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(24년) 고용·국토부
  -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확산을 통해 산재예방 및 관련 산업 촉진, 안전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·평가체계 강화 등 추진 고용부
  - 산업육성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산업 진흥 법령 제정 검토(24년) 고용부
  -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·금융지원·시장 진입 등 단계적 성장지원 방안 마련(24.下) 국토부
- **(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)** 민간 재해예방기관\*을 안전보건 분야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 고용부
  - \*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, 기술지도, 안전인증, 검사, 교육 등 지원(안전·보건·건설 등 13개 분야 1,368개 기관 활동중, '22.7월 기준)
  -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재해예방기관의 차등관리\*를 통해 민간의 안전관리서비스 품질을 강화
    - \* (우수) 기술지도 위탁사업 우선선정 등 / (미흡) 불이익 처분 근거규정 마련 검토
- **(민간 교육기관 활성화)** 안전보건 교육기관\*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개편\*\* 등 제도개선 추진(산안령 개정, '24.上) 고용부
  - \* 근로자교육기관 187개, 직무교육기관 30개 등 전국에 총 217개 활동중(23.7월 기준)
  - \*\* 분야별(기계안전·전기안전·화공안전·건설안전) 교육기관 등록 허용,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기본인력·강사 등에 대한 요건 등 완화
- **(안전보건 제품·서비스 시장 확대)** 안전보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확산 및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추진 고용·중기부
  -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의 산업계 보급 확대 도모 고용부
  - 중소기업 R&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장비 등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, 다양한 판로지원\* 추진 중기부
    - \*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중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연계 지원, 기업·제품 홍보, 매칭행사 참여 등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-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·운영 및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→ 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 →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연계 순차 추진
  -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'24년초부터 신속 추진
  - 추진단·실무TF 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 수시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취합, 추가 보완과제 발굴·추진
  - 연내 예산소요 과제는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(재정당국 협의) 등을 통해 대응,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예산안 편성시 협의 추진
-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,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「'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」 추가 마련('24.下)
  -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상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이번 대책 시행완료('24~'25년) 이후에도 추가 지원방안 지속 강구

추진내용	'24				'25				'26			
	1Q	2Q	3Q	4Q	1Q	2Q	3Q	4Q	1Q	2Q	3Q	4Q
■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·운영('24.1~)	[Progress bar from 1Q '24 to 4Q '24]											
■ 대진단 및 중점관리·일반 사업장 선정('24.2)	[Progress bar from 1Q '24 to 4Q '24]											
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등 추진('24.3~)	[Progress bar from 1Q '24 to 4Q '24]											
■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('24.下~)	[Progress bar from 3Q '24 to 4Q '24]											
■ 성과 진단 및 환류('25.上~)	[Progress bar from 1Q '25 to 4Q '25]											
■ '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마련·추진('24.下)	[Progress bar from 3Q '24 to 4Q '24]											

## 별첨

##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

###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■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·운영	'24.1	고용부
■ 중점관리 및 일반 사업장 선정	'24.2	고용부
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추진	'24.3	고용부

###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·기술지도 지원	'24.1	고용·국토 중기부
■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추진	'24.上	고용·중기부
■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및 「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」 개정	'24.1	고용부
■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확대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	'24.上	고용부
■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	'24.上	고용부

###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■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 지원	'24.1	고용부
■ 스마트 안전장비·시설 지원	'24.3	고용·중기부
■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	'24.上	고용부
■ 스마트 안전공장 및 안전산단 구축	'24~	중기·산업부
■ 안전보건 R&D 추진	'24~	고용부
■ 제조분야 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검토	'24	중기부
■ 건설현장 위험성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 검토	'24	국토부
■ 스마트 안전기술 실증여건 등 제공 추진	'24.下	국토부

####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

추진 과제	추진 시기	소관부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협·단체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</li> </ul>	'24.上	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업종별 협회 중심의 공동컨설팅, 가이드라인 보급 등 추진</li> </ul>	'24.上	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단 통합안전관리 추진</li> </ul>	'24.3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·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</li> </ul>	'24.1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</li> </ul>	'24.上	고용·중기부 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·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규정 마련 * 「(가칭)도급사업시 원·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가이드라인」 마련</li> </ul>	'24.上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*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」 개정</li> </ul>	'24.上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등 개정</li> </ul>	'24.3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</li> </ul>	'24~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</li> </ul>	'24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</li> </ul>	'24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성장지원 방안 마련</li> </ul>	'24.下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개정</li> </ul>	'24.下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민간 교육기관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*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</li> </ul>	'24.上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산업안전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</li> </ul>	'24~	중기·고용부